

제 1023 호
1984. 5. 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무 원
공 보 관 조 남 호
전 화 : 725-7661-9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890 호 :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칙

제 2066 호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4
제 2067 호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운영규칙 4
제 2068 호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시행세칙중 개정규칙 5
제 2069 호 : 서울특별시 지방전문직원 관리규칙중 개정규칙 6

◎ 교육규칙

제 281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8

< 이 면 계 속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발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323 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12

제 324 호 : 관악구봉천동산 175-5 번지 일대 신방대국민학교 사업실시
계획인가 13

제 325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15

제 326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6

제 32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지적승인 17

제 328 호 :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17

제 329 호 :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삼화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8

제 330 호 :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호텔롯데분구) 정비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18

제 331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취장) 결정 및 고시 18

제 33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도로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19

제 333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녹지, 도로, 공원) 지적승인 19

제 33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20

제 33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24

제 33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고시 24

제 33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25

제 33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8

제 339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29

제 340 호 : 남대문구역제 8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29

◎ 공 고

제 315 호 : 응암동 576 의 12-397 의 222 간 도로개설공사시설계획인가
정정공고 30

제 316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공고 33

제 318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 34

제 320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 34

제 321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정정공고 35

제 322 호 : 무교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5

제 323 호 : 을지로 1 가구역제 1-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6

제 324 호 : 도림구역제 22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 37

제 325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37

◎ 구청공고

동작구공고제 27 호 : 민원사무용동장직인 및 제인개각공고 38

◎ 예 규

제 452 호 :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중개정요령 38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6.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서울특별시조례제 1890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
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징수액) 수수료의 징수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채직, 경력, 퇴직)에 관한 증명 1건당 200원
2. 제재된 학교의 학적에 관한 증명 1건당 200원
3. 직인등록에 관한 증명 1건당 200원
4. 연수 이수에 관한 증명 1건당 200원
5. 교육비 납입 및 감면에 관한

- 증명 1건당 200원
 6. 각종 경기입상에 관한 증명 1건당 200원
 7. 원천세 공제에 관한 증명 1건당 200원
 8. 공사 및 물품납품등에 관한 증명 1건당 300원
 9. 재산에 관한 증명 1건당 300원
 10.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건당 300원
 11. 미확정 채권안도에 관한 증명 1건당 500원
 12. 기타 공부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사실증명 1건당 200원
- 제 4 조중 "관공서"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제 6 조의 제목 "기납수수료의 반환"을 "수수료의 반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6.4

서울특별시장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제 2066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 (안)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1 조 (납입독촉) ① 수도요금을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청장은 체납된 수도요금과 조례 제
28 조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
납액을 납기경과후 30일 이내에 10
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 (제
6 호서식) 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독촉기간내에 체납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급수진에 대하여 징
수처분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4 년
6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체
납된 수도요금의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 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6.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2067 호

서울특별시소방교육대운영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소방교육대 (이하 "교육대" 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교육대의 운영에 관
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대행) 교육대장 (이하
"대장" 이라한다) 이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훈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4 조 (전임교관) 훈련부장밑에 전
임교관을 두고 전임교관은 대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
당한다.

제 5 조 (강사초빙) ① 대장은 교육훈
련에 필요할 때에는 의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
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정하
여진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장이 따로 정한다.

규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6.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2068 호

서울특별시보안업무
시행세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에 의거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 “본청 및 산하기관”이라 한다.)에서 “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산하기관(이하 “본청 및 산하기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병원공사등(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 2 조 중 “다만 경찰국 및 경찰국 산하기관은 “을” 다만 경찰국, 경찰국산하기관 및 지방공사는”으로 한다.

제 3 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의회(구협의회)에는 간사 1 인과 서기 1 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서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보안담당자가 되며 협의회

(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제 1 항 중 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공사: 지방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 7 조 중 조령을 “보안담당자 교체 보고”로 하고 동조 제 1 항 중 “경질되었을”을 “바뀌었음”으로 하며 동조 제 2 항 중 “경질되어”를 “바뀌어”로 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1)시장은 규정제 7 조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를 소속공무원과 직원의 개한 II급 및 III급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1. 구청장
2. 경찰국장 및 소방본부장
3. 4급이상 사업소장
4.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5. 지방공사의 장

(2)시장은 규정제 7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1. 제 1 항에서 규정한 비밀취급 인가권자
2. 본청소속공무원(경찰 및 소방공무원제외)
3. 5급이하의 사업소장 및 그소속공무원

제 10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의 2 (자체 보안내규 수립시행)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지방
 공사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세칙
 의 제반사항을 지켜야 하며,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밀취급 인가사무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취급한다.
 제 12 조 제 2 호중 후단에 " 지방공사
 의장 " 을 신설하고 동조중 제 9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공사 인사담당부서 : 자체 기
 관 소속직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전문직원 관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6.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2069 호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원
 관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전문직원 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중 " 전문직원 " 을 " 전문
 직공무원 " 으로 " 비전임직원 " 을 " 비
 전임 전문직공무원 " 으로 한다.

제 2 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
 여 계약당사자가 각기 1 통씩 보관
 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 영 제 6 조 " 를 " 영
 제 5 조 " 로 " 내무부장관에게 심사
 요청을 " 국무총리에게 승인요청 " 으
 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에게 채용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사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내무국장 (참조 : 인사과장) 에게 제출
 그 자격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 부
 2. 자격 및 경력증명서등 각 1 부
 제 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 2 (정원확보) 전문직 공무
 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에
 게 예산승인을 요청할때에는 사전
 에 기획관리실장 (참조 : 시정개발담
 당관)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조중 " 영 제 14 조중 3 급이상 " 을
 " 영 별표 2 중 5 급이상 " 으로
 하고 제 6 조중 " 영 제 9 조의 규
 정에 의거 " 를 삭제하며 제 7 조중
 " 요령 " 을 " 규정 " 으로 한다.

제 1 호 서식본문중 " 규정 " 과 " 제 6
 조 " 사이에 " (이하 " 영 " 이라한
 다) " 를 삽입하고 " 제 6 조 " 를
 " 제 5 조 " 로 하며 제 7 조중 " 제
 8 조 제 1 항 " 을 " 제 6 조 " 로 한다.
 제 2 호 서식중 " 채용예정자 " 다음에
 " 초서 " 를 추가한다.
 제 3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3 호서식)

전문직공무원증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 | | |
|---------|------|-----|
| 전문직공무원증 | 0.3 | 0.3 |
| ① | 1 | 1 |
| ⑤ | 4 | 0.7 |
| ② | 8.1 | 0.7 |
| ③ | 0.75 | 0.7 |
| ④ | 0.75 | 8.1 |
| ⑥ | 1 | 0.7 |
| ⑦ | 0.3 | 0.7 |
| | 0.3 | 1.3 |
| | 0.3 | 0.3 |

- ① 사진 (4.9cm × 4 cm)
- ② 공무원증번호 (번호기로써 적을것)
- ③ 성명 (흑색모필로 기입할것)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 (직경 2 cm)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 ⑦ 직인

교육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 6. 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교육규칙제 281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표

○ 지방공무원 정원총괄표

| | | | |
|--------------------|-------|-------------------|-----|
| 총 계 | 4,923 | 지방사서관 | 14 |
| 별정직계 | 5 | 지방보건기좌 | 2 |
| 비상계획관 (5 급상당) | 1 | 지방전기기좌 | 1 |
| 속기사 (6 급상당) | 2 | 지방토목기좌 | 1 |
| 전산처리사 (7 급상당) | 2 | 지방건축기좌 | 4 |
| " (8 급상당) | - | 지방행정주사 | 520 |
| 3 급내지 9 급 계 | 1,565 | 지방행정주사또는별정직 6 급상당 | 1 |
| 지방부이사관 | 1 | 지방사서 | 46 |
| 지방의무부기감 | 1 | 지방전산처리사 | 1 |
| 지방서기관 | 5 | 지방건축기사 | 19 |
| 지방의무기정 | 5 | 지방전기기사 | 5 |
| 지방행정사무관 | 87 | 지방기계기사 | 5 |
| 지방행정사무관또는별정직 5 급상당 | 1 | 지방토목기사 | 5 |

| | | | |
|----------------------------|-----|-------------------|-------|
| 지방간호기사 | 3 | 지방보건지원 | 3 |
| 지방약부기사 | 1 | 지방간호지원 | - |
| 지방보건기사 | 16 | 지방보건지원보 | 1 |
| 지방보건연구사 | 2 | 지방행정서기보 | 10 |
| 지방행정주사보 | 328 | 지방사서서기보 | 27 |
| 지방사서보 | 77 | 지방간호지원보 | - |
| 지방전산처리사보 | 1 | 지방전기지원보 | - |
| 지방건축기사보 | 12 | 기 능 직 | 40 |
| 지방기계기사보 | 6 | 지방통신장 (6등급) | 1 |
| 지방전기기사보 | 10 | 지방전기장 (6등급) | 4 |
| 지방토목기사보 | 6 | 지방기계장 (6등급) | 12 |
| 지방보건기사보 | 71 | 지방기계장 (7등급) | 18 |
| 지방간호기사보 | 4 | 지방전기장 (7등급) | 3 |
| 지방행정서기 | 185 | 지방통신장 (7등급) | 2 |
| 지방사서서기 | 70 | 지방기계원 (8등급) | - |
| 지방건축지원 | 6 | 지방전기원 (8등급) | - |
| 지방토목지원 | 1 | 지방기계원 (9등급) | - |
| 지방전기지원 | 1 | 지방조무원 (9등급) | - |
| 지방기계지원 | - | 고 용 원 | 3,313 |
| I.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 | | |
| o 교육위원회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 | | |
| 총 계 | 255 | 5급내지 9급제 | 156 |
| 별정직제 | 3 | 지방행정사무원 | 22 |
| 비상계획관 (5급상당) | 1 | 지방행정사무원또는별정직 9급상당 | 1 |
| 속기사 (6급상당) | 2 | 지방보건기과 | 1 |

| | | | |
|-------------------|-----|----------------|----|
| 지방전기과 | 1 | 지방건축기사보 | 5 |
| 지방건축과 | 3 | 지방전기기사보 | 2 |
| 지방토목과 | 1 | 지방기계기사보 | 2 |
| 지방행정주사 | 41 | 지방토목기사보 | 2 |
| 지방행정주사또는별정직 6급상당 | 1 | 지방보건기사보 | 2 |
| 지방전산처리사 | 1 | 지방행정서기보 | 24 |
| 지방토목기사 | 2 | 지방토목기원 | 1 |
| 지방건축기사 | 8 | 지방건축기원 | 4 |
| 지방전기기사 | 1 | 지방전기기원 | 1 |
| 지방기계기사 | 2 | 지방보건기원 | - |
| 지방보건기사 | 2 | 기 능 직 | - |
| 지방행정주사보 | 24 | 지방기계장 (7 등급) | - |
| 지방사서보 | 1 | 지방전기장 (7 등급) | - |
| 지방전산처리사보 | 1 | 고 용 직 | 96 |
| ○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 | | | |
| 총 계 | 957 | 지방사서관 | 14 |
| 3급내지 9급계 | 356 | 지방보건과 | 1 |
| 지방부이사관 | 1 | 지방행정주사 | 22 |
| 지방의무부기감 | 1 | 지방사서 | 46 |
| 지방서기관 | 5 | 지방보건기사 | 7 |
| 지방의무기점 | 5 | 지방보건연구사 | 2 |
| 지방행정사무관 | 19 | 지방간호기사 | 3 |

| | | | |
|----------------------|-----|-------------|-----|
| 지방전기기사 | - | 지방사서서기보 | 27 |
| 지방기계기사 | - | 지방보건기원보 | 1 |
| 지방약무기사 | 1 | 지방간호기원보 | - |
| 지방행정주사보 | 21 | 기 능 직 | 20 |
| 지방사서보 | 76 | 지방기계장 (6등급) | 5 |
| 지방보건기사보 | 10 | 지방전기장 (6등급) | 4 |
| 지방간호기사보 | 4 | 지방통신장 (6등급) | 1 |
| 지방기계기사보 | - | 지방기계장 (7등급) | 7 |
| 지방전기기사보 | - | 지방전기장 (7등급) | 1 |
| 지방행정서기 | 17 | 지방통신장 (7등급) | 2 |
| 지방사서서기 | 70 | 지방기계원 (8등급) | - |
| 지방보건기원 | 3 | 지방통신원 (8등급) | - |
| 지방간호기원 | - | 지방기계원 (9등급) | - |
| 지방행정서기보 | - | 고 용 직 | 581 |
| ○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 | | |
| 총 계 | 567 | 지방전기기사보 | 5 |
| 별정직계 | 2 | 지방행정서기 | 5 |
| 전산처리사 (7급상당) | 2 | 기 능 직 | 16 |
| 전산처리사 (8급상당) | - | 지방기계장 (6등급) | 5 |
| 5급내지 9급계 | 135 | 지방전기장 (6등급) | 1 |
| 지방행정사무관 | 39 | 지방기계장 (7등급) | 8 |
| 지방행정주사 | 37 | 지방전기장 (7등급) | 2 |
| 지방행정주사보 | 45 | 고 용 직 | 414 |
| 지방보건기사보 | 4 | | |
| ○ 서울직업학교 및 아현직업학교 정원 | | | |
| 총 계 | 19 | 지방행정주사 | 2 |
| 6급내지 9급계 | 2 | 고용직 | 17 |

| | | | |
|--|-------|---|-------|
|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구청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 | | |
| ○ 교육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 | | |
| 총 계 | 411 | 지방건축기사보 | 7 |
| 5급내지 9급계 | 240 | 지방전기기사보 | 3 |
| 지방행정사무관 | 7 | 지방보건기사보 | 7 |
| 지방건축기사 | 1 | 지방토목기사보 | 4 |
| 지방행정주사 | 65 | 지방행정서기 | 43 |
| 지방건축기사 | 11 | 지방건축기원 | 2 |
| 지방전기기사 | 4 | 지방기계기원 | - |
| 지방기계기사 | 3 | 지방행정서기보 | 10 |
| 지방토목기사 | 3 | 지방전기기원보 | - |
| 지방보건기사 | 7 | 기능직 | 3 |
| 지방행정주사보 | 59 | 지방기계장 (7등급) | 3 |
| 지방기계기사보 | 4 | 교용직 | 168 |
| ○ 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 | | |
| 총 계 | 711 | 지방행정서기보 | - |
| 6급내지 9급계 | 283 | 기능직 | 1 |
| 지방행정주사 | 140 | 지방기계장 (6등급) | 1 |
| 지방행정주사보 | 122 | 교용직 | 427 |
| 지방행정서기 | 21 | | |
| ○ 국민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 | | |
| 총 계 | 2,003 | 지방행정서기 | 75 |
| 6급내지 9급계 | 393 | 지방보건기사보 | 48 |
| 지방행정주사 | 213 | 교용직 | 1,610 |
| 지방행정주사보 | 57 | | |
| 고 시 | | 국 주택개량과 및 성동구청 주택과와 옥수제 4구역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 1984.6.2 서울특별시장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23 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 | | 가.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 옥수제 4구역 재개발조합 (2) 조합장 : 박정호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 구 옥수동 산 5-96 번지 (4) 조합원수 : 314명 | |
| 1. 도시재개발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 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를 하고, 동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 | |
|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 | | |

나. 사업시행인가 내역

- (1)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산 5-24, 산 5-96, 산 5-102 번지 일대
- (2) 면적 : 71,347 평방미터
- (3) 규모 : 아파트 15층 8동 900가구 및 부대부리시설
- (4) 사업기간 : '84.5. - '85.12.31
- (5) 기타 관계서류 : 별첨 (생략)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조서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4호

관악구봉천동산 175-5 번지일대 신방배국민학교사업실시계획인가

1. 시고제 334 (83.7.5) 및 제 496 호 (83.9.24) 로 각각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고 서, 공고 289 로 공람공고한 신방배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천동 산 175-5 번지 일대에 신방배국민학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5. 3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봉천동산 175-5 번지일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서울신방배국민학교 시설사업)
 다. 규모

- 건축면적 : 1513
- 연면적 : 5495
- 교실 : 40 실 (2동 콘크리트 조적조 4층)
- 관리실 : 4 실
- 변 소 : 9 동
- 창 고 : 2 동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교육감 (동학교육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1984.6.1
- 준공 : 1985.3.1

바.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사. 시행인가 설계도서 : 별첨 (계획생략)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주소, 성명

| 학교명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소유자주소성명 | 소유인의 |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의권리명세 |
| 신방배국민학교 | 관악구봉천동 | 산175-3 | 임야 | 298 | 관악구봉천동 1597 김덕준 | 없음 |

| 학교명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소유자주소설명 | 소유권의 이외의 권리명세 |
|-------------|------------|---------|-----|-----------------|-----------------------------|---------------------|
| | | | | | 관계인주소설명 | |
| 신방배 국민학교 | 관악구 봉천동 | 산175-6 | 임야 | 123,471 중 7,413 | 용산구이태원동 260-217 주상옥 | 좌 소 |
| | | 175-9 | " | 4,661 중 200 | 용산구이태원동 260-217 | 없 음 |
| | | 175-14 | " | 2,810 중 90 | 강서구등촌동 654-41 | 없 음 |
| | | 175-27 | " | 6,605 중 1,120 | 영등포구신길동 402-2 김종만 신비수 | |
| | | 390-2 | 전 | 625 | 관악구봉천동 1597-14 김은택 | 없 음 |
| | | -3 | " | 532 중 50 | 용산구청과동 1가 113-14 김운경 | 없 음 |
| | | 392-2 | " | 3,500 | 마포구합정동 413-19 유원국 | |
| | | 392-1 | " | 1,031 중 250 | 충북보은군보은읍이평리 76 김주희 | 좌 소 |
| | | 783-64 | 하천 | 738 중 500 | 천안시오룡동 85 방인원 | |
| | | 783-179 | " | 66 | 강남구반포동산 67-9 박영복 | |
| | | 11 필지 | | | 14,113 | 국유지 주상옥 |

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 학교명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
| 신방배 국민학교 | 관악구 봉천동 | 산175-3 | 임야 | 298 | 없 음 |
| | | -6 | " | 123,471 중 7,413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 -9 | " | 4,661 중 200 | 없 음 |
| | | -14 | " | 2,810 중 90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 -27 | " | 6,605 중 1,120 | 없 음 |
| | | 390-2 | 전 | 625 | |
| | | 390-3 | " | 532 중 50 | 근저당권설정 |

| 학교명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 신방배 국민학교 | 관악구 봉천동 | 산 392-2 | 전 | 3,500 | 소유권말소소제기 |
| | | -1 | " | 1,031 중 250 | 소유권이전청구권사등기 |
| | | 783-64 | 하천 | 738 중 500 | 없 음 |
| | | -179 | " | 66 | " |
| | | 11-설지 | | 14,112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25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1. 당서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전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6. 4

서울특별시장

가. 학교결정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신설 | 학 교 | 성동구구의동 4 - 2 일대 | 11,967 | |
| " | " | 은평구응암동산 6 - 4 일대 | 10,460 | |
| " | " | 관악구신림동 336 일대 | 7,679 | |
| " | " | " " 225 일대 | 26,678 | 2 개 교 |

나.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고 |
|----|----|----|-------|-------|--------------|----------------|----|
| 기정 | 소로 | 2 | 8 | 140 | 은평구응암동 236-2 | 은평구응암동 242-240 | |
| 변경 | " | " | " | " | " | " | 폐지 |
| 신설 | " | " | " | 70 | " 242-238 | " | |
| 기정 | " | 3 | 6 | 65 | 관악구신림동 277-3 | 관악구신림동 229 | |

| 구분 | 등급 | 류번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변경 | 소로 | 3 | 6 | 65 | 관악구신림동 277-3 | 관악구신림동 229 | 폐지 |
| 기정 | " | 3 | 6 | 150 | " 224-1 | " 217 | |
| 변경 | " | 3 | 6 | " | " | " | 폐지 |
| 기정 | " | 3 | 6 | 40 | " | " 225-15 | |
| 변경 | " | 3 | 6 | " | " |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6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58 호 (84.3.30) 로 도시계획사업변경 시행허가된 관내 잠실동 40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지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동구 잠실동 40번지

○ 토지조서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
명칭 : 한양유통
- 다. 사업규모
기정 : 7,132.26 ㎡
변경 : 9,504.53 ㎡ (지상 2층에 2,372.27 ㎡)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40번지 한양유통(주) 남 욱
-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84.5 - '84.12.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소유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 강동구 잠실동 40 | 대 | 23,971.8 | 서울특별시장 | 한양유통(주) 남 욱 시유재산 매매계약 |

| ○ 건물주소 | | | | | | |
|--------------|-----------|------------|------------------------|----------------|---------------------------------|-----|
| 소재지 | 면적 (㎡) | 구 조 | 용 도 | 소유자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비 고 |
| 강동구 잠실동40 | 25,212.22 | 철근콘 크리트 |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한양유통 (주) 남욱 | 농어촌개발공사,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근저당권설정 | |

아. 시행허가 설계도서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29호 (84.4.26)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조 권한의 위임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6. 4

서울특별시 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주소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신설 | 대로 | 3 | 157 | 25 | 970 | 하일동 618-2 | 하일동 378-1 | |
| 가정 | 소로 | 1 | | 10 | 380 | " " | " 642 | |
| 변경 | 대로 | 3 | 157 | 25 | 380 | " " | " " | 일부구간확장 |
| 가정 | 중로 | 3 | | 12 | 90 | " 642 | " 643 | |
| 변경 | 대로 | 3 | 157 | 25 | 90 | " " |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8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05호 (78.8.11)로 실 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한 일은행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 6. 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기간

당초: '78.7 - '84.5.31

변경: '78.7 - '84.11.30

나. 가사용기간

당초: '81.8.12 - '84.5.31

변경: '81.8.12 - '84.11.30

◎ 서울특별시고시제 329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삼화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76 호 ('80.5.26)
로 실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정
비지구 (삼화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6 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변
경 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4.6.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기간

당초 : 78.11.11-84.5.31

변경 : 78.11.11-84.11.30

나. 기사용기간

당초 : 81.11.17-84.5.31

변경 : 81.11.17-84.11.30

◎ 서울특별시고시제 330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호텔롯데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9 호 (76.3.13)

가. 결정조서

로 실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
비지구 (호텔롯데분구) 정비사업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변
경 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4.6.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기간

당초 : 75.12-84.5.31

변경 : 75.12-84.11.30

◎ 서울특별시고시제 331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토취장)) 결정및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
택지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이
를 고시한다.

2. 관련도서는 목동지구개발 계획단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

1984.6.5

서울특별시 장

| 구분 | 사 | 업 | 위 | 치 | 면 | 적 | 비 | 고 |
|----|------------|---|-------------------------|---|---------|---|---|---|
| 신설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 강서구 신월동산 154-1 번지 일원 | | 173,000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32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학교및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5 호 (84.4.17) 및 동고시 제 190 호 (84.4.17) 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및 학교, 도로) 을

가. 여객자동차 정류장, 학교조서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5

서울특별시 관

|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변경 | 여객자동차정류장 · 학교 (혜성여고) | 도봉구우이동 178-1 일대 | 5,403.5 | 감) 122 | 5,281.5 | |
| | | 도봉구하계동 산 16-38 일대 | 9,554 | 증) 15,206 | 24,760 | |

나. 도로 지적승인 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결 | 비 고 |
|----|----|----|-------|-------|-----------------|----------------|-----|
| 기점 | 소로 | 3 | 6 | 155 | 도봉구하계동 223-5 | 도봉구하계동 23-4 | 폐지 |
| 변경 | · | · | · | · | · | · | |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33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녹지, 도로, 공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녹지, 도로, 공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5

서울특별시 관

| ○ 시설조서 | | | | | | | | |
|--------|-----|---------------|-----|------|---------|---------------|--------------|-------------|
| 구분 | 시설명 | 위 치 | | | 규모 (㎡) | 비 고 | | |
| 신설 | 하수도 | 강서구마곡동, 방화동일대 | | | 610,000 | 감) 3,500 ㎡ | | |
| · | · | 강서구방화동 106 일대 | | | 45,000 | | | |
| 변경 | · | 강서구방화동 169 일대 | | | 69,000 | | | |
| ○ 도로조서 | | | | | |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시 점 | 종 점 | 비 고 |
| 신설 | 중로 | 3 | 172 | 12 m | 850 m | 방화동 (대 2-41) | 방화동 118 | () |
| 기정 | 대로 | 2 | 41 | 30 m | 9,000 m | 양화교 (광로 16) | 개 화동시계 | 위치및연장 변경 |
| 변경 | · | 2 | 41 | 30 m | 6,500 m | · | 방화동 (광로 19)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3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82.2.3) 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지 및 서고 제 486 호 (82.11.30)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6 조 및 동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7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산 2-6 외 15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산연국민학교 신축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시행면적 : 29,290 ㎡

건축면적 : 2,070 ㎡

건축연면적 : 8,046 ㎡ (지상 4)

교실수 : 64 실

학급수 : 45 학급 수용예정

| | |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시 교육위원회교육감 (서부교육구청장) 마. 사업기간 : 1984.3-1986.12.31 바. 위치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수동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

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 학교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
|--------------|-------------|----------|----|--------|----------------|
| 서울신연 국민학교 | 서대문구 연희동 | 산 2 - 71 | 임 | 3,301 | |
| | | ▣ - 72 | ▣ | 212 | |
| | | ▣ - 97 | ▣ | 1,692 | |
| | | ▣ - 94 | ▣ | 48 | |
| | | ▣ - 96 | ▣ | 898 | |
| | | ▣ - 95 | ▣ | 242 | |
| | | ▣ - 98 | ▣ | 19 | |
| | | ▣ - 92 | ▣ | 377 | |
| | | ▣ - 99 | ▣ | 7,058 | |
| | | ▣ - 93 | ▣ | 171 | |
| | | ▣ - 6 | ▣ | 10,913 | |
| | | ▣ -104 | ▣ | 164 | |
| | | ▣ -105 | ▣ | 716 | |
| | | ▣ -106 | ▣ | 137 | |
| | | ▣ - 67 | ▣ | 3,540 | |
| ▣ - 99 | ▣ | 2 | | | |
| 계 | | | | 29,490 | |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에의한이해관계인주소, 성명

(서대문구연희동)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 |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
|----------|-----------|----|-----------|-----------|----------------|--|----------------------|------------------------|
| | | | | | | 관 | 계인주소성명 | |
| 1 | 산 2-71 | 임 | 3,301 | 3,301 | | (7분지 3지분) 서울시 서울성북구돈암동 11번 김병목 지 24 현대아파트 21 다 (7분지 1202 4지분) 서울성북구종암동 김재순 54-367 (7분지 4지분) | 사실상소유자 (등기부미정리) | |
| 2 | 산 2 - 72 | " | 212 | 212 | | 상 동 상 동 | | |
| 3 | 산 2 - 97 | " | 1,692 | 1,692 | | 상 동 상 동 | | |
| 4 | 산 2 - 94 | " | 48 | 48 | | 서울성북구돈암동 11번 김병목 지 24 현대아파트 21 다 (54,186 1202 분 지 50,814 지분) 서울서대문구연희동 김재철 산 1-86 54,186 분 지 50,814 지 분 | 사실상소유자 (등기부미정리) | |
| | | | | | | 미합중국 위스칸신주 김영옥 니나시서러슨로 3118 54,186 분 지 3,372 지 분 | | |
| 5 | 산 2 - 96 | " | 898 | 898 | | 상 동 상 동 | 동 | |
| 6 | 산 2 - 95 | " | 242 | 242 | | 상 동 상 동 | 동 | |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번 | 지목 | 지적 (㎡) | 입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 권리의 종류 및 내 |
|----------|-----------|----|-----------|-----------|----------------|---|-------------------------------------|-----------------------------|
| | | | | | | 관 | 계인 주소 성명 | |
| 7 | 산2-98 | 임 | 19 | 19 | | 서울성북구돈암동 11번 김병목 지 24 현대아파트 21 (7분지 다 1202 4지분) | 서울성북구종암동 김재순 54-367 (7분지 4지분) | 사실상소유자 (등기부여정리) |
| | | | | | | 서울강남구압구정동 김양미 298 현대아파트 201동 (7분지 803호 1지분) | | |
| | | | | | | 서울강남구반포동 257 김달생 3신반포4차아파트 (7분지 205동 908호 1지분) | | |
| | | | | | | 서울종로구동숭동 김영자 25-9 (7분지 1지분) | | |
| 8 | 산2-92 | · | 377 | 377 | | (관리청개무부) 국유지 | | |
| 9 | ·-99 | · | 7,058 | 7,058 | | 상 동 | | |
| 10 | ·-93 | · | 171 | 171 | | (관리청국세청) 국유지 | | |
| 11 | ·-6 | · | 10,913 | 10,913 | | 상 동 | | |
| 12 | ·-104 | · | 164 | 164 | | 상 동 | | |
| 13 | ·-105 | · | 716 | 716 | | 상 동 | | |
| 14 | ·-106 | · | 137 | 137 | | 상 동 | | |
| 15 | ·-67 | · | 3,540 | 3,540 | | 상 동 | | |
| 16 | ·1-99 | 도 | 2 | 2 | | | 서울시 | |
| 계 | 16 필지 | | 29,490 | 29,490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35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4호 (82.10.4) 및 동고시 제 512호 (82.12.9)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교사증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6 조 1 항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

1984.6.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서구내 발산동 71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화곡고등학교
3. 사업의 규모 :
변경전 (건물지하 1 층, 지상 5 층
3,179.655㎡)

가. 지적승인조서

변경후 (건물지하 1 층, 지상 4 층
3,055.725㎡)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마포구도화동 181-58 학교법인 홍신학원
5. 사업시행허가 : 1982.12.9-84.10.30
6. 허가도서 : 별첨도면 (생략)
7. 토지조서 : 강서구내 발산동 715 (학교용지) 11,453㎡

◎서울특별시고시제 33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34호 (83.11.24) 호로 결정된 도봉구 월계동 447 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아래조서 내용과 같이 고시한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고 일반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8

서울특별시장

| 구분 | 로형 | 류별 | 규모 | 기점 | 종점 | 비고 |
|---------------|----|----|-----------------|----------------|----------------|----|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 | 2 | B=8 m L=60 m | 월계동 447 -39 | 월계동 447 -13 |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제 33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서울특별시 공고 제224 호 (84.4.19) 로 공람 공고한 쌍문동 372 번지의 1 개소 도로에 대한

여 아래사업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토목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의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내용

| 사업시행지 | 사업의종류 | 규 모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비 - |
|----------------------|--------|---------------------------------------|---------|----------|-----|
| 쌍문동 372-15 번지의 40 필지 | 도로개설공사 | B = 25 m L = 500 m A = 15,000 m | 84.6.15 | 85.12.30 | |
| 수유동 459-6 번지의 29 필지 | " | B = 20 m L = 470 m A = 9,400 m | " | " | |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 속의 권리명세서 (별첨)

5.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도시수용법 제 4 조 3 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4·19 입구 - 한신대학간 도로개설공사)

| 지 번 | 지목 | 지적 (m) | 면적 (m)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
| | | | | 관 | 계 인 주소 성명 | |
| 수유동 459-6 | 전 | 3 | 2 | 수유동산 129 | 학교법인한신대 | |
| 459-5 | 대 | 2 | 2 | " | " | |
| 454-6 | 전 | 17 | 17 | " | " | |
| 454-2 | 전 | 248 | 248 | " | " | |
| 454-4 | 전 | 86 | 86 | " | " | |

| 지 번 | 지목 | 지적 (㎡) | 면적 (㎡)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
|-----------|----|-----------|-----------|-----------------|----------|-----------------|
| | | | | 관계인 주소 성명 | | |
| 수유동 456-5 | 대 | 15 | 15 | 수유동산 129 | 학교법인한신대 | |
| 456-3 | 대 | 466 | 466 | " | " | |
| 455-5 | 대 | 152 | 152 | " | " | |
| 산 129-7 | 임 | 2,089 | 2,089 | " | " | |
| 629-1 | 도 | 18 | 18 | 국 | 국 | |
| 445-51 | 대 | 66 | 66 | 성북동선동 4 가 98 | 윤 영 상 | |
| 508-87 | 대 | 281 | 281 | 용산한강로 3 가 63-17 | 강달신의 99인 | |
| 508-78 | 대 | 145 | 145 | 수유동 508-78 | 안 경 숙 | |
| 440-21 | 대 | 1,825 | 1,825 | 종로신문로 2 가 1-122 | 조 북 길 | |
| 627-27 | 구 | 38 | 38 | 국 | 국 | |
| 436-2 | 대 | 777 | 777 | 종로신문로 2 가 1-122 | 조 북 길 | |
| 435-78 | 대 | 51 | 51 | 용산한강로 3 가 63-17 | 강달신의 99인 | |
| 435-77 | 대 | 247 | 247 | 수유동 430 | 김 철 수 | |
| 435-1 | 대 | 27 | 27 | " | " | |
| 626-27 | 도 | 490 | 490 | 국 | 국 | |
| 626-26 | 도 | 25 | 25 | 국 | 국 | |
| 430-2 | 대 | 856 | 856 | 수유동 430 | 김 철 수 | |
| 430-17 | 대 | 87 | 87 | " | " | |
| 431-2 | 전 | 122 | 122 | 서대문창전동 | 안 정 업 | |
| 410-3 | 대 | 489 | 489 | 수유동 130-146 | 박 성 서 | |
| 410-182 | 대 | 580 | 580 | 수유동 130-46 | " | |
| 410-237 | 대 | 284 | 284 | 종로충신동 175-14 | 이 규 연 | |
| 410-94 | 대 | 395 | 395 | 성북동소문 6 가 174 | 홍병근의 6인 | |
| 441-33 | 대 | 116 | 116 | 청주시북문로 1 가 152 | 정의태의 1인 | |
| 441-72 | 대 | 61 | 61 | " | " | |

토 지 조 서

(쌍문로 개설공사)

| 지 번 | 지목 | 기적 (㎡) | 면적 (㎡)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
|------------|----|-----------|-----------|-------------|---------|-----------------|
| | | | | 관계인 주소 성명 | | |
| 쌍문동 333-15 | 대 | 53 | | 쌍문 292 | 김 장 손 | |
| 373-5 | 전 | 215 | | 성북정능동 167-2 | 김장화의 1인 | |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면적 (㎡) | 소유자 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
|------------|-----|------------|-----------|---------------|----------|-----------------|
| | | | | 소유자 주소성명 | 관계인 주소성명 | |
| 쌍문동 378-21 | 구 | 728 | | 서울시 | | |
| 378-18 | 도 | 153 | | | | |
| 375-20 | 대 | 3 | | | | |
| 378-5 | 답 | 2,392 | | 종로창신동 1305 | 김정회 | |
| 377 | 답 | 2 | | 쌍문 377 | 서호경 | |
| 379 | 답 | 77 | | 쌍문 379 | 연문환 | |
| 378-15 | 도 | 534 | | | 서울시 | |
| 380-1 | 대 | 862 | | | 한국전력(주) | |
| 348-4 | 답 | 193 | | 중구충무로 2가 2-4 | 양면훈 | |
| 347 | 답 | 148 | | 쌍문 314-4 | 한철희 | |
| 348-3 | 답 | 600 | | | | |
| 346-1 | 답 | 876 | | 쌍문 274 | 이종호 | |
| 342-2 | 답 | 1,552 | | 중구을지로 5가 27-1 | 김현배의 11인 | |
| 378-9 | 도 | 70 | | | 서울시 | |
| 343-8 | 답 | 604 | | | 김현배의 11인 | |
| 343-4 | 답 | 967 | | 동대문청량리동 235-1 | 정명순 | |
| 322-1 | 전 | 5 | | 미주아파트 3동 808 | | |
| 343-11 | 답 | 1,017 | | 쌍문 314 | 한철순 | |
| 316 | 전 | 555 | | 동대문청량리 235-11 | 정명순 | |
| 314-17 | 답 | 106 | | 미주아파트 3동 808 | | |
| 314-14 | 답 | 29 | | 쌍문 321 | 최홍용 | |
| 315 | 전 | 392 | | 성동금호 4가 681 | 김갑순 | |
| 314-13 | 답 | 271 | | 수유동 270-168 | 김진태의 3인 | |
| 313-2 | 전 | 198 | | 쌍문 321 | 최홍용 | |
| 315-134 | 대 | 20 | | 동각상도동 259-10 | 정익규 | |
| 313-1 | 전 | 40 | | 번동 314 | 최수단 | |
| 314-12 | 답 | 191 | | 쌍문 315-80 | 윤영균 | |
| 306-39 | 대 | 16 | | 번동 314 | 최수단 | |
| 314-18 | 답 | 311 | | 중구충무로 5가 2-4 | 양명호 | |
| | | | | 쌍문 306-9 | 김간영 | |
| | | | | 성동용담동 107-5 | 한영명 | |

| 지 번 | 지 목 | 지 치 (㎡) | 편입면 적 (㎡) | 소 유 권 주 소 성 명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 | | | | 관 제 인 주 소 성 명 | | |
| 쌍문동 314-10 | 답 | 99 | | 도봉동 103-255 | 박 정 현 | |
| 315-128 | 대 | 33 | | 쌍문 315-80 | 윤 영 균 | |
| 312-2 | 답 | 339 | | 번동 314 | 최 수 만 | |
| 315-133 | 대 | 50 | | " | 한국전력(주) | |
| 311-1 | 전 | 378 | | " | 최 수 만 | |
| 315-8 | 대 | 897 | | 목표시죽교동 6 | 양 점 섭 | |
| 315-349 | 대 | 299 | | 종로향촌동 171-26 | 안 중 철 | |
| 315-351 | 대 | 1,043 | | 용산이촌동 300-10 | 최 순 환 | |
| 315-348 | 대 | 125 | | 종로향촌동 171-26 | 안 중 철 | |
| 315-18 | 대 | 129 | | 쌍문 315-18 | 이 성 회 | |

◎서울특별시고시제 338 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지한다.

1984.6.4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강서구화곡동 225 번지의 7 신안건설 산업주식회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강서구마곡동 327 번지의 29 호의 28 필지
 나. 면적 : 17,605.22 ㎡
 다. 규모 : 연립주택 3 층 8 동 234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4.6-85.5
5. 도로변경 결정조서

| 구분 | 종 류 | 폭 원 | 연 장 | 시 점 | 총 점 | 비 고 |
|----|--------|-----|-------|-----------|------------|--------------|
| 당초 | 소로 3 류 | 6 m | 138 m | 방화동 327-8 | 방화동 327-71 | 폐 지 |
| " | " | 6 m | 64 m | " 327-47 | " 327-71 | " |
| 변경 | " | 6 m | 74 m | " 338-1 | " 332 | 위 폐지에 따 른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제 339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8
서울특별시장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 기정 및 변경 | 학교 (장로회 신학대학) | 성동구 광장동 산 62-3 일대 | 53,610 | 도면일부정정 |

※ 도면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40 호
남대문구역 제 8 지구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9 호 (33.10.4) 로 사업시행인가된 남대문구역 제 8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
 가. 변경내용
 ○ 건축계획

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9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4.6.8
서울특별시장

|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 수 | 주용도 | 비고 |
|----|----------|--------|---------|-----------|-------|----------------------------|
| 기정 | 2,438.6㎡ | 48 %이하 | 500 %이하 | 지상 10 층이하 | 업무및판매 | 지상 4 층일부 업무 시설 → 판매 시설로 변경 |
| 변경 | " | " | " | " | " | |

○ 변경사유 : 동일층내 상호기능 저해 해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15 호

응암동 576의 12-397의 222간도로개설
공사시설계획인가정절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3 호 (69.1.18)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은평구 응암동 397 의 72의 3 필지의 도로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측량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5

서울특별시장

○ 공람개요

- (1) 사업시행지 : 은평구 응암동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설

응암동 576 의 12-397 의 222 간 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폭 5.5-6 m 연장 200 m 면적 12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50 일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토지 건물 소유자로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8)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나) 보상의 시기 : 보상협의 완료후

(다) 보상절차

1)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절차 요구일로부터 2개월이내 협의 취득

2)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25 조 2 항 및 동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라) 보상지급 방법

1) 토지 : 계약과 동시 보상금 전액 지급

2) 건물 : 계약과 동시 70 % 지급 철거후 잔액 지급

용암동 576-12 ~ 397-222 간도로개설공사정정토지조서

| 소재지 | 분할전토지 | | | 분할후(수용대상)토지 | | | | |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
|--------|---------|----|---------------------|-------------|---------|----|----|---------------------|----|---------------|-----|--------------|---|
|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지번 | | 지목 | | 면적(m ²) | | 관계인주소성명 | | | |
| | | | | 당초 | 정정 | 당초 | 정정 | 당초 | 정정 | | | | |
| 은평구용암동 | 397-72 | 대 | 1 | 397-72 | 397-357 | 대 | 대 | 1 | 4 | 은평구용암동 397-72 | 박형훈 | 측량한 결과에 의한정정 | |
| | 397-73 | 대 | 1 | 397-73 | 397-320 | 대 | 대 | 1 | 6 | · | 재병진 | | · |
| | 397-88 | 대 | 2 | 397-88 | 397-355 | 대 | 대 | 2 | 4 | · | 박영숙 | | · |
| | 397-315 | 대 | 2 | 397-315 | 397-361 | 대 | 대 | 2 | 3 | · | 최득소 | | · |

토지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정정없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m ²)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
| | | | | 관계인주소성명 | | |
| 은평구용암동 | 397-72 | 대 | 106 | 용암동 397-72 | 박형훈 | |
| · | 397-73 | 대 | 102 | · 397-45 | 재병진 | |
| · | 397-88 | 대 | 79 | · 397-88 | 박영숙 | |
| · | 397-315 | 대 | 9 | · 397-19 | 최득소 | |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소재지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지적 |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
| | 당초 | 정정 | 당초 | 정정 | 당초 | 정정 | 관계인주소성명 | | |
| 은평구용암동 | 397-72 | 397-357 | 대 | 대 | 1 | 4 | | 측량한 결과에 의한정정 | |
| · | 397-73 | 397-356 | 대 | 대 | 1 | 6 | | | |
| · | 397-88 | 397-355 | 대 | 대 | 2 | 4 | | | |
| · | 397-315 | 397-361 | 대 | 대 | 2 | 3 | | | |

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성명

| 소재지 | 지 번 | | 허 가 별 | | 공부상면적(m) |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
| | 당 초 | 점 점 | 당 초 | 점 점 | 당 초 | 점 점 | 관 계 인 주소 성 명 | | |
| 은평구 응암동 | 397-37 | 397-37 | 무허가 | 무허가 | 2 m ² | 0 m ² | 응암동 397-37 | 이재현 | 측량결과에 의한점점 |
| | 397-89 | 397-89 | 무 | 무 | 10 | 0 | 397-89 | 김달식 | |
| | 402-80 | 402-80 | 무 | 무 | 12 | 8 | 402-80 | 안석준 | |
| | 397-99 | 397-215 | 무 | 무 | 10 | 5 | 397-99 | 오홍표 | |
| | 402-54 | 402-142 | 무 | 무 | 5 | 2 | 402-54 | 이문찬 | |
| | 397-73 | 397-73 | 유 | 유 | 0 | 3 | 397-73 | 제병진 | |
| | 402-140 | 402-140 | 유 | 유 | 0 | 6 | 402-140 | 이창갑 | |
| | 397-229 | 397-229 | 무 | 무 | 0 | 2 | 397-229 | 정상철 | |

사용또는수용할건물의소재지허가별수용면적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소재지 | 지 번 | | 허 가 별 | | 수용면적(m) | | 소유자주소성명 | |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
| | 당 초 | 점 점 | 당 초 | 점 점 | 당 초 | 점 점 | 관 계 인 주소 성 명 | | |
| 은평구 응암동 | 397-37 | 397-37 | 무 | 무 | 2 | 0 | | | 측량결과에 의한점점 |
| | 397-89 | 397-89 | 무 | 무 | 10 | 0 | | | |
| | 402-80 | 402-80 | 무 | 무 | 12 | 8 | | | |
| | 397-99 | 397-215 | 무 | 무 | 10 | 5 | | | |
| | 402-54 | 402-142 | 무 | 무 | 5 | 2 | | | |
| | 397-73 | 397-73 | 유 | 유 | 0 | 3 | | | |
| | 402-140 | 402-140 | 유 | 유 | 0 | 6 | | | |
| | 397-229 | 397-229 | 무 | 무 | 0 | 2 | | | |

◎ 서울특별시공고제 316 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8 호 (78.8.25) 로 시설결정되고 동 제 287 호 (79.6.29) 로 지적승인된 당곡중 (당곡국) 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6.5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성격 : 도시계획사업 (당곡중 (당곡교) 학교진입로 개설) 시행

다. 사업규모 : B=6-8 m L=689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가.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란다.

o 토지조서

| 지 번 | 지 목 | 면적 (㎡)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 | | | 관 | 객 인 주소 성명 | |
| 봉천동 686-28 | 대 | 17 | 강남구 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08 동 304 호 이성범 | | |
| • 686-32 | • | 34 | 봉천동 686 한정희 | | |
| • 686-34 | • | 63 | • 686-14 최정환 | | |
| • 686-35 | 절 | 82 | 영등포당산동 4 가 1 안해숙 | | |

o 건물조서

| 지 번 | 건물종류 | 구 조 | 수량 (㎡) | 소유자 주소 성명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 | | | | 관 | 객 인 주소 성명 | |
| 봉천동 686 | 주택 (1층) | 연외조 세면외습 | 12 | 봉천동 686 한정희 | | 단 강 2.2 m x 10 m |
| • 686-7, 14 | 주택 (1층) 지 하 | • | 50 | • 686-14 최정환 | | 단 정 1.8 m x 9 m |
| | | | 5.96 | | | |

◎서울특별시공고제 318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
행정처분공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7 조 제 2 항 및 3 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

음 시공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하였 기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84.6.8

서울특별시장

아 래

| 지정번호 | 소재지 | 상 호 | 대표자 | 적 출 내 용 | 조 치 사 항 |
|------|------------|--------|-----|-------------------------|------------------------------|
| 23 | 신설동 91-246 | 화신상공사 | 오계환 | 무단강소이전 | 지정취소 |
| 74 | 면목동 466-29 | 재일기업사 | 장태상 | " | " |
| 88 | 망우동 461-20 | 동부종합설비 | 신현섭 | " | " |
| 133 | 장안동 181-1 | 영남설비 | 김동률 | 84.1.31 시공정지 기술요원미채용 | " |
| 72 | 용두동 45-1 | 동국종합설비 | 이동국 | 기술요원미채용 | 시공정지 2 개월 84.4.27-84.6.27 |
| 148 | 장안동 382-9 | 성원설비 | 이환구 | " | 84.5.3-84.7.3 |

◎서울특별시공고제 320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같은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4.6.5

서울특별시장

다 음

| 업종및면허번호 |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취소일자 | 취 소 사 유 | 근거법규 |
|------------------------------|----------|-----|--------------|--------|---------|----------------------------------|
| 철물 (서울 11-68) 설비 (서울 12-270) | 세익건설 (주) | 전병만 | 용산구동자동 14-27 | 84.6.7 | 면허기준 미달 | 건설업법 38 조 1 항 1 호 및 같은법 42 조 2 항 |

| <p>◎서울특별시공고제 321 호</p> <p>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 정정공고</p> <p>서울특별시 공고 제 263 호 (84.5.3) 로 건설업 (전문공사업) 영업정지 공</p> | | <p>고를 한전중 다음 업체에 대한 행 정처분은 행정 착오로 인한 처분이 였으므로 이를 정정 공고한다.</p> <p>1984.6.5</p> <p>서울특별시장</p> | | | |
|--|---|--|--|---------------------------|---|
| <p>다 음</p> | | | | | |
| 업종및면허번호 |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영업정지 기간 | 비 고 |
| <p>철근콘크리트 (서울 10-103)</p> <p>창호 (인천 08-59)</p> <p>철물 (11-64)</p> <p>석공 (서울 83-04-54)</p> <p>설비 (서울 83-18-303)</p> <p>미장방수 (서울 83-03-171)</p> | <p>원진개발 (주)</p> <p>남동 (주)</p> <p>공영</p> <p>문창건설 (주)</p> <p>시원 (주)</p> <p>토건</p> | <p>박희태</p> <p>한규남</p> <p>이의성</p> <p>김신원</p> | <p>강남구역삼동 779-3</p> <p>중구광화동 1가 142</p> <p>용산구원효로 2가 14-</p> <p>강남구역삼동</p> | <p>84.6.8- 85.6.7</p> | <p>84.5.3 자행정서 분시누락분</p> <p>84.5.3 자행정서 분취소</p> |
| <p>◎서울특별시공고제 322 호</p> <p>무교구역제 3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공고</p> | | <p>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 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공 제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 반인에게 보인다.</p> <p>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 고로 통지에 갈음한다.</p> <p>1983.6.8</p> <p>서울특별시장</p> | | | |
| <p>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46 호 (76.4.7) 서울특별시고시 제 234 호 (84.4.27)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32 호 (84.4.27) 로 재개발사업제 3 개발 자로 지정된 유진관광(주) 대표곽유자 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에 의</p> | | | | | |

가. 공람개요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무교구역제 3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무교동 21-10, 무교동 55, 56, 56-4, 57, 60, 60-1, 61-1, 62, 63-1, -2, -3, 65, 84, 85, 86-1, -3, -4, -5, -6, 87 (제 21 필지)
- 3) 시행면적 : 3,853.2 ㎡
- 4) 시행자 : 유진관광(주)
대표 광 유 지
-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무교동 63-1
- 6)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4년간
- 7) 건축개요
 - 대지면적 : 3,232.9 ㎡
 - 건축면적 : 1,387.5 ㎡
 - 연 면 적 : 34,077.8 ㎡
 - 건 폐 율 : 42.92 %
 - 용 적 율 : 622.78 %
 - 용 도 : 호텔 및 사무실
 - 층 수 : 지상 20층, 지하 5층
- 8) 공람기간 : 84.0.8-84.7.7
- 9)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 제 323 호

울지로 1가구역제 1 - 1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68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382 호 (78.11.30) 로 건축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73 호

(84.2.11) 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울지로 1가구역제 1 - 1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 삼익건설(주) 대표 이창수가 도시재개발법 제 14 조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법제 12 조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던 바 동법제 15 조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4. 6. 8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개요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울지로 1가 1 - 1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울지로 1가 15-1, 16, 16-1, -4, 17, 19, 21-1, -2, -3, -4, 22, 25, 26-1, 29-1, 38-2, 41-3, 44-1, -2, 46, 47-1, -2, 53, 4, 53, 53-5, 54, 54-1, -2, -3, -4, 55, 56-1, 56-2 (제 32 필지)
- 3) 시행면적 : 2,439.7 ㎡
- 4) 시행자 : 삼익건설(주)
대표 이 창 수
-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침당동 134-20
- 6)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간
- 7) 건축개요

- 대지면적 : 2,105.㎡
- 건축면적 : 932.45.㎡
- 연면적 : 19,120.42.㎡
- 층 수 : 지상 13층, 지하 4층
- 주 용 도 : 업무 및 판매시설
- 8) 공람기간 : 84.6.8-84.7.7
- 9)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 공고제 324 호

도림구역제 22 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공고

서울특별 시고시제 198 호 (82.5.15) 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도림구역제 22 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제 3 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 6.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2. 사업명칭 : 도림구역제 22 지구
3. 사업시행인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 (82.5.15)
4. 시행자주소,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종로구 도림동 34-1
 - 명 칭 : 도림구역 제 22 지구 재개발조합
5. 준공면적
 - 가. 토 지
 - 대 지 : 3,291.9.㎡

- 공공용지 : 966.7.㎡
- 제 : 4,258.6.㎡
- 나. 전 물
 - 건축면적 : 1,313.67.㎡ (39.91%)
 - 연 면 적 : 24,847.64.㎡ (478.39%)
 - 층 수 : 지상 12층, 지하 4층
 - 용 도 : 업무시설

서울특별시공고 제 325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및 관계도면 공람



1. 하수도 법제 6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법에서 1984.2.16.제 3 호로 인가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및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4. 6. 9

서울특별시장

공고 및 공람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 1984.6.7
2. 배수구역 : 도면별첨 (동작구청 토목과 비치) - 생략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및 공사개요
 - 가. 사업명 : 대방동 82-3 하수구 정

| | | |
|---|---------------------------------|---|
| <p>비공사 나. 위 치 : 대방동 82-3-82-4 다. 개 요 : 압거 (3.0 × 2.5) L = 27 M 4. 사용 을 개 시 하 려 는 공 공 하 수 도 의 합 류 식 또는 분 류 식 의 구 별 : 합 류 식</p> | <p>인 영</p> |  |
| | <p>공인명</p> | <p>사당제 3 동장직인 (민원사무전용)</p> |
| <p style="text-align: center;">구 청 공 고</p> | <p>인 영</p> |  |
| | <p>공인명</p> | <p>사당제 3 동장직인 (민원사무전용)</p> |
| <p style="text-align: center;">동작구공고 제 2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원 사무용동장직인 및 제인개각공고</p> <p>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원 사무용 동장직인 및 제인을 개각 사용 승인하였기 동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6. 1</p> <p style="text-align: center;">동 작 구 청 장</p> <p>1. 공인명 칭 : 사당제 3 동 민원사무용 동장직인 및 제인 2. 사용 개시일시 : 1984.6.15 09:00 3. 공인인명 : 별첨</p> | <p>예 규</p>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예규 제 45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급수공사 사무취급요령 개정요령</p> <p>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중 일반주택의 급수공사 설계범위에 “양수기실에서 2미터내에 부동급수주 반드시 설치”를 삽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요령은 1984.6.20 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

사 령

◎ 1984 년 6 월 1 일자

령제 199 호

| 성 명 | 발 명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오용근 | 문교부 근무를 명함. | 마포구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 1984 년 6 월 4 일자

령제 201 호

| 성 명 | 발 명 사 항 | 현 부 서 | 직 급 |
|-----|---------|---------|---------|
| 최인석 | 기획담당관 | 기획관리실 | 지방행정주사 |
| 김귀성 | " | " | 지방행정주사보 |
| 이봉희 | " | " | " |
| 조동래 | 예산담당관 | " | " |
| 오종일 | " | " | " |
| 서성범 | " | " | " |
| 정찬규 | " | " | " |
| 최은섭 | 투자관리담당관 | " | " |
| 송종식 | " | " | " |
| 이종영 | " | " | " |
| 민병덕 | " | " | " |
| 이상태 | 시정개발담당관 | " | " |
| 김대기 | " | " | " |
| 이종인 | 법무담당관 | 시정개발담당관 | " |
| 송두석 | 기획담당관 | " | " |
| 이상도 | 투자관리담당관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김병수 | 통계담당관 | 시정개발담당관 | 지방행정주사보 |
| 박광필 | 심사분석담당관 | " | " |
| 이종범 | 올림픽기획담당관 | 올림픽기획단 | " |
| 이기조 | 올림픽지도담당관 | " | " |
| 이충명 | 사회지도담당관 | 감사관 | " |
| 봉병인 | " | " | " |
| 허영수 | 관재과 | 재무국 | " |
| 김홍수 | 회계과 | " | " |
| 이유택 | 보건위생과 | 보건사회국 | " |
| 최종익 | " | " | " |
| 유재원 | 사회과 | " | " |
| 김항배 | 상공과 | 산업경제국 | " |
| 주일규 | 연료과 | " | " |
| 박재경 | 양정과 | " | " |
| 박태석 | 건설행정과 | " | " |
| 이성곤 | 주택개발과 | " | " |
| 심충성 | 도로과 | " | " |
| 박정기 | 청소과 | 환경녹지국 | " |
| 박병양 | 하수과 | 상하수국 | " |
| 한재수 | 업무과 | " | " |
| 정종기 | 치수과 | " | " |
| 설동을 | 운영과 | 민방위과 | " |
| 윤유종 | 총무과 | 내무국 | " |
| 우상길 | " | " | " |
| 김호연 | 인사과 | " | " |
| 유재광 | 행정과 | " | " |
| 이종두 | " | " | " |
| 조병원 | 시민과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 박홍식 이해준 최덕준 | 새마을지도과 " " 문화과 | 내무국 " " " " | 지방행정주사보 " " " " | |
| ◎ 1984년 6월 5일자 령제 207호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김일중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 중구수도관리과 | 지방행정주사 | |
| 령제 208호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문정만 | 지방별정직 6급상당에 임함. 경찰국면허과 근무를 명함. | 경찰국 면허과 | 지방별정직 7급상당 | |
| 문창희 | 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함. 부너복지관 근무를 명함. | 부너복지관 | 지방별정직 8급상당 | |
| 령제 209호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이세봉 송상천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 보건환경연구소 아동상담소 | 지방별정직 7급상당 8급상당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1984년 6월 1일자 령제 210호 | | | |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발령처 |
| 박종길 |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 중앙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 대통령 |

| 성명 | 발령사항 | 원부서 | 직급 | 발령처 |
|-----|------------------------------|------------------------------|---------|-----------|
| 신창우 | 내무국 근무를 병합. 서울특별시 근무를 병합. | 기획부발전과 서울특별시 교통부비상계획관실 | 행정사무관 | 시장 대통령 |
| 인사진 | 내무국 근무를 병합. 서울특별시 근무를 병합. |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심사분석1과 | " | 시장 대통령 |
| 문현식 | 내무국 근무를 병합. | 서울특별시 총무처 1부서우담당관실 | " | 시장 대통령 |
| 장현각 | " |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행정실 | " | 시장 대통령 |
| 이원태 | " | 서울특별시 용산세무서소득세 2과장 | " | 시장 대통령 |
| 문충실 | " | 서울특별시 농수산부가공이용과 | " | 시장 대통령 |
| 정종안 | " | 서울특별시 공업진흥청등급관리과 | " | 시장 대통령 |
| 이승천 | " | 서울특별시 노동부서울부지방 사무소서무과장 | " | 시장 대통령 |
| 서강석 | " | 서울특별시 해외공보관기획과 | " | 시장 대통령 |
| 고경석 | 행정사무관에 임함. 경제기획원 근무를 병합. | 서울특별시 마포구사회복지과 | 지방행정사무관 | 시장 대통령 |
| 최 식 | 행정사무관에 임함. 조달청 근무를 병합. | 용산구청소과 | " | 대통령 |
| 한상백 | 행정사무관에 임함. 총무처 근무를 병합. | 마포구청소과 | " | 대통령 |
| 김지한 | 행정사무관에 임함. | 용산구새마을과 | " | 대통령 |

| 성명 | 발령사항 | 현부서 | 직급 |
|-----|--------------|-----------|---------|
| 김용각 |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 도봉구상제 4 동 | 지방행정주사보 |
| 안명석 | " | 강서구사회복지과 | " |
| 김재웅 | " | " 청소과 | " |
| 이필호 | " | 영등포구건설관리과 | " |
| 강세형 | " | 강동구세무 1 과 | " |
| 김은구 |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 도봉구 " | 지방행정서기 |
| 김귀순 | 지방간호기원에 임함. | 성동구보건소 | 지방간호기원보 |
| 유현저 | " | 성북구보건소 | " |
| 김순우 | " | 영등포구보건소 | " |

서울특별시장